|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16호  세무 시스템 '팡관푸(放管服)' 개혁 요구를 진일보 실행하여 수출세금환급(면제) 수속을 간소화하고 수출세금환급(면제) 서비스를 개선하며 세금환급 진도를 지속적으로 가속화하고 대외무역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 관련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는 수출세금환급(면제) 비안(備案) 수속 이행 시 규정에 따라 개정된 <수출세금환급(면제) 비안(備案)표>(첨부1)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출기업과 기타 업체가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환급(면제) 사전신고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관할 세무기관은 신고증빙의 내용이 해당 관리부서의 전자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3. 면저퇴세(免抵退稅)방법을 시행하는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가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를 함에 있어 당기 <증치세 납세 신고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수출기업이 규정에 따라 대리수입화물증명 발행을 신청함에 있어 수입화물세관신고서(가공무역 전용)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5. 대외무역기업이 화물을 구매함에 있어 세금환급(면제) 신고 수속을 분할하여 진행하거나 생산기업이 타사가 생산한 과세대상 소비품을 구매함에 있어 소비세 환급 신고 수속을 분할하여 진행하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이 수출세금징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증빙을 확인하고 수출기업은 관할 세무기관에 <수출세금환급 구매 분할 신고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6.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가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 시 제출한 수출세관신고서, 대리수출화물증명, 위탁수출화물증명, 증치세구매증빙이 여전히 상응되는 전자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증빙내용이 전자정보와 불일치한 경우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수출세금환급(면제) 증빙 관련 전자정보 부재 신고표>(첨부2)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세금환급(면제) 신고증빙과 신고자료는 세무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기업이 보관 및 비치한다.  7.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가 화물•용역을 수출하거나 다국적 증치세과세대상행위를 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일부 서류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 수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수출세금환급(면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할 세무기관에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기한 연장 신청표>(첨부3)와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기관은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에 고지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사회돌발사건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증빙을 도난 또는 강탈당했거나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증빙이 우편배달 과정에서 분실되었거나 잘못 배달된 경우;  (3) 유관 사법기관•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증빙을 압수한 경우;  (4) 매매거래 양당사자 사이에 경제분쟁이 발생하여 적시에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증빙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5) 기업 세무담당자의 사망, 위중질환 발병 또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인수인계 수속이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규정된 기한 내에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증빙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6) 기업이 세관에 수출화물세관신고서 수정 신청을 제출하였고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세관의 수정 처리가 이뤄지지 아니함으로써 규정된 기한 내에 수출화물세관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7) 유관 정부부서가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 수속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의 경우.  8. 수출기업은 세금환급(면제)를 신고한 수출화물에 대하여 <국가세무총국의 수출기업의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신고 시 외화수금자료 제출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30호, 이하 '제30호 공고'로 약칭)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외화를 수금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외화수금이 이뤄지지 아니한 수출화물은 증치세 면세 정책을 적용받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수출기업은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 시 반드시 제30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외화수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세금환급(면제)기업 분류관리 등급이 4등급인 경우;  (2) 수출기업이 신고한 외화수금 불능 사유가 조작된 것임을 관할 세무기관이 발견한 경우;  (3) 수출기업이 제출한 수출화물외화수금증빙이 모용(冒用)된 것임을 관할 세무기관이 발견한 경우.  상기 제(1)호의 경우 기업의 등급이 관할 세무기관에 의해 4등급으로 평정된 달의 익월부터 집행한다. 제(2)호, 제(3)호의 경우 관할 세무기관이 수출기업에 통보한 날로부터 24개월 동안 집행한다. 상기 사유에 따른 집행기간은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수출기업이 상기 사유 중 2개 이상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유의 종료일 중 가장 늦은 종료일을 집행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9. 생산기업은 매년 4월 20일 전에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에 세관에서 이미 핵소(核銷)가 이뤄진 진료가공(進料加工)수책(장부)상의 진료가공(進料加工) 업무 핵소(核銷) 수속을 관할 세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4월 20일 전에 핵소(核銷) 수속이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그 핵소(核銷) 수속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기업의 수출세금환급(면제) 업무 처리를 일시적으로 보류한다.  (1) 생산기업은 핵소(核銷) 신청에 앞서 관할 세무기관으로부터 세관이 온라인으로 감독관리하는 가공무역 전자데이터 중 진료가공(進料加工) '전자수책(전자화수책) 핵소(核銷) 데이터'와 진료가공(進料加工) 업무의 수입•수출화물 세관신고 데이터를 획득하여야 한다.  생산기업은 그가 획득한 세관 데이터를 진료가공(進料加工)수책(장부)에 기재된 실제 발생 수입•수출 상황과 대조확인 후 <생산기업 진료가공(進料加工) 업무 면저퇴세(免抵退稅) 핵소(核銷)표>(첨부4)를 관할세무기관에 제출하여 핵소(核銷)를 신청한다. 대조확인 과정에서 실제 발생 업무와 세관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생산기업은 <기(旣)핵소(核銷)수책(장부) 세관 데이터 조정표>(첨부5)를 추가로 작성하여 전자데이터 및 증명자료와 같이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 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전자데이터를 수출세금환급 심사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생산기업 진료가공(進料加工) 업무 면저퇴세(免抵退稅) 핵소(核銷)표>, <기(旣)핵소(核銷)수책(장부) 세관 데이터 조정표> 및 증명자료를 심사하여야 한다.  (3) 관할 세무기관이 핵소(核銷)를 확인한 후 생산기업은 <생산기업 진료가공(進料加工) 업무 면저퇴세(免抵退稅) 핵소(核銷)표>상의 '기(旣)핵소(核銷)수책(장부)' 종합 실제 배분율'을 당해 연도의 진료가공(進料加工) 계획배분율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핵소(核銷) 확인이 이뤄진 달의 익월에 납세신고 시 <생산기업 진료가공(進料加工) 업무 면저퇴세(免抵退稅) 핵소(核銷)표>에 의해 확인된 면제•공제불가세액에 근거하여 조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핵소(核銷) 확인이 이뤄진 후 최초로 면저퇴세(免抵退稅) 신고 시 <생산기업 진료가공(進料加工) 업무 면저퇴세(免抵退稅) 핵소(核銷)표>에 의해 확인된 면저퇴세액(免抵退稅額)에 근거하여 당기 면저퇴세액(免抵退稅額) 조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소(核銷) 데이터의 오류를 발견한 생산기업은 오류가 발견된 달의 익월에 상기 제(1)호 ~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기관에서 핵소(核銷) 수속을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10. 세신용등급, 세관기업신용관리유형, 외환관리분류관리등급 등에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분류관리등급 평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수출기업은 수출기업 관리등급 평정 업무를 담당한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관리등급 재평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유관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세금환급(면제)기업 분류관리 방법> 개정본 발표에 관한 공고>(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46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재평가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평정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11. 주항공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궤도상에서 우주선 및 관련 화물을 인도하는 국내 업체는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 시 <우주발사 업무 수출세금환급 신고 명세표>(첨부6)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와 원시증빙의 복사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발사계약서 또는 궤도상인도계약서;  (2)발사계약서 또는 궤도상인도계약서와 대응되는 프로젝트 리스트 내에서 구입한 우주수송기 및 관련 화물과 우주선 및 관련 화물의 증치세전용영수증 또는 세관수입증치세전용납세서, 발사•운행 보장 서비스 구매 증치세전용영수증;  (3) 주항공수송용역계약 상대방 업체로부터 취득한 대금의 수금증빙.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0세율 적용 서비스 세금환급(면제)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11호) 제9조 제(2)항 제1목에 규정된 기타 상업위성 발사 서비스 자격 증명자료에는 국가국방과기공업국이 발급한 <민용 우주발사 프로젝트 허가증>이 포함된다.  12. <폐지 문건•조항 목록>은 첨부7을 참고한다.  이 공고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1. 수출세금환급(면제) 비안(備案)표  <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700>  2. 수출세금환급(면제) 증빙 관련 전자정보 부재 신고표  <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701>  3.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기한 연장 신청표  <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702>  4. 생산기업 진료가공(進料加工) 업무 면저퇴세(免抵退稅) 핵소(核銷)  <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703>  5. 기(旣)핵소(核銷)수책(장부) 세관 데이터 조정표  <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713>  6. 우주발사 업무 수출세금환급 신고 명세표  <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705>  7. 폐지 문건•조항 목록  <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706>  국가세무총국  2018년 4월 19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出口退（免）税申报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16号  　　为进一步落实税务系统“放管服”改革要求，简化出口退（免）税手续，优化出口退（免）税服务，持续加快退税进度，支持外贸出口，现就出口退（免）税申报有关问题公告如下：  　　一、出口企业或其他单位办理出口退（免）税备案手续时，应按规定向主管税务机关填报修改后的《出口退（免）税备案表》（附件1）。  　　二、出口企业和其他单位申报出口退（免）税时，不再进行退（免）税预申报。主管税务机关确认申报凭证的内容与对应的管理部门电子信息无误后方可受理出口退（免）税申报。  　　三、实行免抵退税办法的出口企业或其他单位在申报办理出口退（免）税时，不再报送当期《增值税纳税申报表》。  　　四、出口企业按规定申请开具代理进口货物证明时，不再提供进口货物报关单（加工贸易专用）。  　　五、外贸企业购进货物需分批申报退（免）税的以及生产企业购进非自产应税消费品需分批申报消费税退税的，出口企业不再向主管税务机关填报《出口退税进货分批申报单》，由主管税务机关通过出口税收管理系统对进货凭证进行核对。  　　六、出口企业或其他单位在出口退（免）税申报期限截止之日前，申报出口退（免）税的出口报关单、代理出口货物证明、委托出口货物证明、增值税进货凭证仍没有电子信息或凭证的内容与电子信息比对不符的，应在出口退（免）税申报期限截止之日前，向主管税务机关报送《出口退（免）税凭证无相关电子信息申报表》（附件2）。相关退（免）税申报凭证及资料留存企业备查，不再报送。  　　七、出口企业或其他单位出口货物劳务、发生增值税跨境应税行为，由于以下原因未收齐单证，无法在规定期限内申报的，应在出口退（免）税申报期限截止之日前，向负责管理出口退（免）税的主管税务机关报送《出口退（免）税延期申报申请表》（附件3）及相关举证资料，提出延期申报申请。主管税务机关自受理企业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完成核准，并将结果告知出口企业或其他单位。  　　（一）自然灾害、社会突发事件等不可抗力因素；  　　（二）出口退（免）税申报凭证被盗、抢，或者因邮寄丢失、误递；  　　（三）有关司法、行政机关在办理业务或者检查中，扣押出口退（免）税申报凭证；  　　（四）买卖双方因经济纠纷，未能按时取得出口退（免）税申报凭证；  　　（五）由于企业办税人员伤亡、突发危重疾病或者擅自离职，未能办理交接手续，导致不能按期提供出口退（免）税申报凭证；  　　（六）由于企业向海关提出修改出口货物报关单申请，在出口退（免）税申报期限截止之日前海关未完成修改，导致不能按期提供出口货物报关单；  　　（七）有关政府部门在出口退（免）税申报期限截止之日前未出具出口退（免）税申报所需凭证资料；  　　（八）国家税务总局规定的其他情形。  　　八、出口企业申报退（免）税的出口货物，应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出口企业申报出口货物退（免）税提供收汇资料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30号，以下称“30号公告”）的规定在出口退（免）税申报截止之日前收汇，未按规定收汇的出口货物适用增值税免税政策。对有下列情形之一的出口企业，在申报出口退（免）税时，须按照30号公告的规定提供收汇资料：  （一）出口退（免）税企业分类管理类别为四类的；  （二）主管税务机关发现出口企业申报的不能收汇原因是虚假的；  （三）主管税务机关发现出口企业提供的出口货物收汇凭证是冒用的。  　　上述第（一）种情形自出口企业被主管税务机关评定为四类企业的次月起执行；第（二）种至第（三）种情形自主管税务机关通知出口企业之日起24个月内执行。上述情形的执行时间以申报退（免）税时间为准。  　　出口企业同时存在上述两种以上情形的，执行时间的截止时间为几种情形中的最晚截止时间。  　　九、生产企业应于每年4月20日前，按以下规定向主管税务机关申请办理上年度海关已核销的进料加工手册（账册）项下的进料加工业务核销手续。4月20日前未进行核销的，对该企业的出口退（免）税业务，主管税务机关暂不办理，在其进行核销后再办理。  　　（一）生产企业申请核销前，应从主管税务机关获取海关联网监管加工贸易电子数据中的进料加工“电子账册（电子化手册）核销数据”以及进料加工业务的进口和出口货物报关单数据。  　　生产企业将获取的反馈数据与进料加工手册（账册）实际发生的进口和出口情况核对后，填报《生产企业进料加工业务免抵退税核销表》（附件4）向主管税务机关申请核销。如果核对发现，实际业务与反馈数据不一致的，生产企业还应填写《已核销手册（账册）海关数据调整表》（附件5）连同电子数据和证明材料一并报送主管税务机关。  　　（二）主管税务机关应将企业报送的电子数据读入出口退税审核系统，对《生产企业进料加工业务免抵退税核销表》和《已核销手册（账册）海关数据调整表》及证明资料进行审核。  （三）主管税务机关确认核销后，生产企业应以《生产企业进料加工业务免抵退税核销表》中的“已核销手册（账册）综合实际分配率”，作为当年度进料加工计划分配率。同时，应在核销确认的次月，根据《生产企业进料加工业务免抵退税核销表》确认的不得免征和抵扣税额在纳税申报时申报调整；应在确认核销后的首次免抵退税申报时，根据《生产企业进料加工业务免抵退税核销表》确认的调整免抵退税额申报调整当期免抵退税额。  　　（四）生产企业发现核销数据有误的，应在发现次月按照本条第（一）项至第（三）项的有关规定向主管税务机关重新办理核销手续。  　　十、出口企业因纳税信用级别、海关企业信用管理类别、外汇管理的分类管理等级等发生变化，或者对分类管理类别评定结果有异议的，可以书面向负责评定出口企业管理类别的税务机关提出重新评定管理类别。有关税务机关应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修订后的〈出口退（免）税企业分类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46号)的规定，自收到企业复评资料之日起20个工作日内完成评定工作。  　　十一、境内单位提供航天运输服务或在轨交付空间飞行器及相关货物，在进行出口退（免）税申报时，应填报《航天发射业务出口退税申报明细表》（附件6），并提供下列资料及原始凭证的复印件：  　　（一）签订的发射合同或在轨交付合同；  　　（二）发射合同或在轨交付合同对应的项目清单项下购进航天运输器及相关货物和空间飞行器及相关货物的增值税专用发票或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接受发射运行保障服务的增值税专用发票；  　　（三）从与之签订航天运输服务合同的单位取得收入的收款凭证。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适用增值税零税率应税服务退（免）税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11号）第九条第二项第1目规定的其他具有提供商业卫星发射服务资质的证明材料，包括国家国防科技工业局颁发的《民用航天发射项目许可证》。  　　十二、《废止文件、条款目录》见附件7。  　　本公告自2018年5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附件：1.出口退（免）税备案表  <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700>  2.出口退（免）税凭证无相关电子信息申报表  <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701>  3.出口退（免）税延期申报申请表  <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702>  4.生产企业进料加工业务免抵退税核销表  <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703>  5.已核销手册（账册）海关数据调整表  <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713>  6.航天发射业务出口退税申报明细表  <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705>  7.废止文件、条款目录  <http://hd.chinatax.gov.cn/guoshui/action/ShowAppend.do?id=15706>  国家税务总局  2018年4月19日 |